

환경라운드 대응방안

■환경처 환경라운드 실무대책반

1.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가. 환경규제기준의 강화

(기본 방향)

- ◇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99년까지 법령상 예고된 수준으로 강화토록 하되
- ◇ 환경라운드 진행추이, 관련업계의 대응능력 등 국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규제수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및 WHO 수준까지 강화

<현황>

-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은 전반적으로 일본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이지만 미국기준과는 유사

• NO₂, CO, O₃는 WHO수준, SO₂는 미국수준이며, 먼지는 선진국에 비해 완화

○ 수질환경기준은 pH, COD, BOD 등 대부분의 항목이 일본 전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총인은 일본에 비해 완화

-배출허용기준

○ 대기기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대부분의 항목이 완화되어 있으며, 다만 철강공장 전기아크로 시설의 먼지기준이 일본, 독일에 비하여 다소 강화된 수준

• 법령상 26개 규제항목에 대하여 3단계('91~'94, '95~'98, '99년 이후)로 적용기준이 예고되어 있어, '99년 이후에는 미국·일본의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설정

○ 수질기준은 대부분의 항목이 일본 전국기준보다 강화되어 있거나 동일수준이며, PCB만 완화되어 있음

• 법령상 28개 규제항목에 대하여 2단계('92~'95, '96년 이후)로 기준강화 법령예고

<대책>

-선진국 수준(미국, 일본)에 상당히 근접한 대기환경기준은 이를 더욱 보완하고, 선진국에 비해 느슨

한 수질환경기준은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강화

-배출허용기준은 이미 법령에서 예고된 강화계획에서 더 나아가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 환경규제기준 강화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추가비용부담, 기술능력, 기업의 수용태세 등 조사 및 이에 따른 기준강화시기 및 수준결정을 위한 조사·분석('94~'95)

-주요오염배출원을 대상으로 현행 농도규제에 병행, 총량규제제도 도입 추진

○ 대상범위, 시행방법, 효과 등 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조사 연구 용역 실시('94~'95)

나. 오염 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

(기본 방향)

- ◇ 후진국형 오염다발 산업공정을 저공해·무공해 공정으로 대체

<현황>

-제조업종별 오염배출 원단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오염공정 자체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음.

<대책>

-국내·외 오염공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95~'96)

-오염공정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검토

○ 오염공정의 지정 및 규제, 부과금 부과, 오염업종별 사용가능 공정의 지정 등 검토

다. 환경위해 제품의 사용규제

(기본 방향)

- ◇ 특정상품이나 성분의 사용규제는 기술수준과 직결되므로 환경위해 성분 및 상품의 대체물질개발에 주력

〈현황〉

-환경에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 약 460여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

○제품 수출·입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검사제도 및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제도 시행

〈대책〉

-특정성분 및 함유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체제 강화계획 수립추진('95)

○OECD가이드라인 및 선진외국의 화학물질평가·관리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체제 확립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특정제품 및 물질의 생산, 사용,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강구

* 산업공정 및 제품에서 사용하는 특정물질에 대한 대체물질개발계획 수립, 추진(관련부처 협의)

2. 경제적 수단의 활성화

가. 배출부과금제도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83.9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배출부과금제도를 시행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아닌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

〈대책〉

-배출총량기준 부과금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조사 실시('95~'96)

○배출원에 대한 총량규제제도와 연계 추진

나.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

〈현황〉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93년부터 폐기물예치금 및 처리비용부담금제도를 시행

○현행 예치금·부담금 요율은 실 회수·처리비용의 10~20% 수준이며, 예치금 반환실적은 7.8%('93년)수준에 불과

〈대책〉

-예치금·부담금 대상품목 확대 및 요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95~'9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3. 환경관련 기술기준 정비

가. 환경분야 기술규정 강화

〈기 본 방 향〉

◇ 선진국의 다양한 환경분야의 기술장벽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관련제도를 이에 맞추어 보완

〈현황〉

-기술규제는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 근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GATT 사무국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정수는 모두 211건('80~'90년)

○유독물질(87건), 대기오염(71건), 소음(20건) 등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기술규정은 10여종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대기환경보전법)

○냉장고의 소음도, 세계의 생분해도 등 한국산업규격(산업표준화법)

○화학물질의 제조·수입규제(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임

〈대책〉

-선진국 환경관련 기술규정의 현황 파악 및 무역규제 사례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94~'95)

○자동차 배기검사기준 강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기준, 전자렌지의 전자파기준, 세계의 무해성 기준 등 선진국의 무역장벽 사례조사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후 우리 제도·법령개선·보완('96)

나. 환경경영표준규격 제정 추진

〈기 본 방 향〉

◇ 현재 진행중인 국제표준기구(ISO)의 환경표준화규격 제정에 대응하여 국내 관련 표준규격을 제정(관계부처와 공동추진)

-장기적으로 국제규격과 우리의 규격이 일치되도록 추진

〈현황〉

-'93.12월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국제환경경영표준화대책반”을 설치하고 산하에 5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국제동향에 대처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중

〈대책〉

-ISO환경표준규격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94~'95)

-국내 환경규격 제정('98)

○'98년까지 완료될 ISO 환경경영규격을 감안, 산업표준화법을 개정, 환경경영규격 채택

○인증심사 및 감사자 양성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국내 인증제도 마련

도입을 추진중

〈대책〉

-기업의 환경정책·목표,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 환경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인증제도 도입 추진('97)

○정부 또는 정부지청 민간단체가 감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

4.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가. 환경마크제도 개선

〈현황〉

-'92.4월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환경처고시)하여 환경마크 대상상품 및 부여기준을 규정

○현재 환경마크 사용승인 현황은 60개업체, 147개 상품

※ 선진국은 2~3천개 상품수준

○대상상품은 재활용품목(50%), 저공해품목(50%) 등 23개품목

〈대책〉

-외국의 제도분석으로 국내 환경마크제도를 보완, 강화('98)

○환경마크 부여기준에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Life Cycle)에 걸친 환경영향 관련기준을 포함

○ISO 국제표준화규격(Eco-Labeling)제정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입수·분석하여 국내 제도에 적용

○환경마크 부착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확대

○환경마크제도 운영 전담기구 설치

* 가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근거 마련

나.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감사제도 도입

〈현황〉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자체 환경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없음

○영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환경경영체제 감사제도

5. 폐기물관리제도 강화

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현황〉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지정 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처, 상공자원부 통합고시, '93.12)을 제정

재활용가능차원별 이용목표율

(단위 : %)

	'94~'95	'96~'97	'98~
폐 지	47	50	55
폐 철 캔	20	30	40
폐 유 리	42	47	52
폐플라스틱	5	10	20

〈대책〉

-선진국의 재활용산업 실태, 환경라운드가 국내 재활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에 관한 용역조사 실시('95)

-자원재활용 기본계획('94~'97)의 세부 실천대책 수립·추진

-폐기물 회수·처리체계 개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제품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시('95)

나. 포장폐기물관리제도

〈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93.8)을 제정하여 시행중

○제품별 포장공간비·포장횟수·재질 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 유도

○포장재질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별 포장공간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촉진 미흡

(대책)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 강화('96)

○선진외국의 포장폐기물관리제도에 대한 실태와 무역장벽적 요소의 조사 분석 및 국내포장기준 강화('95)

6.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기본 방향)

- ◇ 첨단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 2000년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 기업의 환경투자를 유도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

(현황)

-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2,315억원(국고 1,715억원, 민간 600억원)을 년차적으로 투자, 저공해소각기술·고효율 집진기술 등 21개 환경기술개발과제(G-7 프로젝트)를 추진중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 Technology)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환경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은 아직 초기단계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기술개발자금을 장기저리융자('93년, 6억원)

-환경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환경산업 관련업체는 약 8,500개 업체가 있으며, 자본규모 10억원 이하(약 65%)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임

○환경산업을 통합관리하는 법령이 없이 개별법에 의하여 운영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등을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대책은 미흡

(대책)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장기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정부가 환경기술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환경산업체에 대한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지원

-민간부문 환경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확대

○'94~'97년까지 149억원 지원계획

-환경오염방지기금, 공업발전기금, 금융기관 기술개발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 기금규모를 확대하여 기존의 사후처리기술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청정기술개발분야에까지 지원되도록 추진

○현재의 환경오염방지기금 규모가 영세하므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100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지원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96)

○선진국의 최신 환경기술자료 및 연구동향을 입수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정보수요자에 대한 보급체제 마련

7.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기본 방향)

- ◇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조기 가입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므로써 불필요한 무역마찰 방지
- ◇ 우리의 선발개도국 위치를 충분히 활용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반영

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 개요)

-멸종위기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특정 생물종 및 그 제품의 무역규제

- '75.7발효, 우리나라는 '93.10가입

(대책)

-호골 및 서각의 거래·사용 금지를 위한 법령정비('94)

○호골 및 서각 등의 국내거래금지 근거규정 마련(보사부 약사법)

○적법하게 수입된 호골재고에 대해서는 등록, 표시제 실시 및 일정기간만('95.2까지) 사용을 허용

-3년간 가입유보된 웅담 및 사향의 유보시한 만료 후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극소화 대책 수립 추

진('96)

○한약재 대체 개발 및 인공사육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지원강화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대국민 홍보

○대국민 홍보책자 발간

○한약방, 한의원에 호골·서각 등 불법 한약재 사용금지 홍보스티커 부착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내에 통관 불가능한 규제대상종 실물전시장 설치

나. 바젤협약

〈협약 개요〉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국가간 거래 및 처리로 인한 지구환경오염방지

-총 47종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금지

-'92.5발효, 우리나라는 '94.2가입

〈대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92.12)의 시행령 제정('94)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절차 등을 규정

-후속 협상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규제대상 폐기물 분류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우리입장 적극 반영

○OECD가입후 선진국 분류에 대비

-기 추진중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방안과 연계, 폐기물의 회수 및 재이용 극대화

다. 생물다양성협약

〈협약 개요〉

-지구상의 생물종 및 그 서식처 보호

-'92.6채택, 우리나라는 '94. 상반기 가입예정

〈대책〉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등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94)

○외래종의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관련 기술협약 강화, 국내생물자원의 대외 반출 제한 등 협약규정을 국내법에 반영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94~2003)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대책 수립·추진

○생물자원의 조사 및 목록작성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 생물종

및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체계 확립

-유전공학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유전공학 연구기금 조성, 신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도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마련

라. 기타 협약(관계부처와 공동 추진)

-몬트리올의정서 이행과 관련, CFC 등 대체물질 개발 추진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의 개편 추진 등

8. 관련 정보의 수집 전파체계 구축

〈기본방향〉

◇ 환경라운드와 관련한 국제동향의 신속한 파악·분석·전파로 다가오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유관기관간 정보 Network을 구성하여 관련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라운드에 대한 대응능력 증진

〈현황〉

-현재 환경라운드와 관련하여 유관부처,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이용

○각 부처·기관·단체간 정보교류가 미흡하여 입수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대책〉

-해외 정보 수집망 확대

○재외공관, 대한무역진흥공사, 민간상사 주재원을 통한 정보수집활동 강화

○재외공관 주재 환경관 확대, 관련 국제기구 파견 등

•환경라운드 관련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거나 환경라운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기구 또는 지역

•GATT(WTO) : 파견관, 제네바 대표부 환경관

•OECD : 파견관, OECD대표부 환경관(OECD 임시대표부 포함)

•미국 : 환경관(주미대사관)

•EU대표부 : 환경관

-정보전파 공유 체계 구축

○법정부적 환경라운드 대응능력 증진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산·학·연 등 관련기관 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Network 구성

- 환경처가 매월 관련기관, 전문가가 입수한 자료를 취합하여 구성원에 배포
-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등 민·관·학 관련 연구기관

•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와 주요기업

* 구체적 Network 구성원 List작성

○ 장기적으로는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서 추진중인 종합환경정보망 구축으로 연계하여 국내·외 정보의 공유체제 확립('98년 이후)

9. 향후 추진계획

〈기본 방향〉

- ◇ 기존의 환경·산업·외교정책과 연계 추진
- 환경대책분야는 환경처소관 실·국별로 추진
- ◇ 환경처에 환경라운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 지구환경대책기구를 통하여 관련부처별 업무분담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 '92년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설치된 지구환경관계장관 대책회의, 차관급 실무대책회의, 국장급 기획단회의를 통하여 부처별 업무를 분담,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

□ 환경대책분야는 환경처 소관부서별로 기존의 환경정책과 연계 추진

- 부서별 정책수립시 환경라운드 진행동향을 반영하여 탄력적 추진

□ 환경라운드 담당조직 강화

- 환경처에 환경라운드 전담반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 대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 소관 실·국의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금년도 용역비, 국외여비 등은 예산을 전용해서 충당

- '95년 이후의 소요재원은 예산반영 ◀

Q. 체중이 발꿈치에 실려 있다.

A. 체중이 뒤꿈치에 실린다면 → 새우등의 전조

☞ 체중이 너무 뒤꿈치에 실리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상반신이 자연히 앞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서서 체중이 약간 발끝에 실리는 정도 — 이것이 바른 자세, 노화방지의 기본이기도 하므로 잊지 말도록 한다.

Q. 한쪽 발로 설 수 있다.

A. 한쪽 발로 서지 못한다 → 추간연골 헤르니아

☞ 눈을 뜨는 감든 어느 쪽이나 무방하다. 추간연골 헤르니아라면 어쨌든 한쪽 발로 서는 일 자체가 힘이 들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발끝까지 저림이 있는지 어떤지를 체크한다. 이것도 증상의 하나이다.

Q. 구두 뒤축이 금방 닳는 편이다.

A. 구두 뒤꿈치가 금방 닳는 사람은 →

척추성 우뇌(愚腦)의 전조

☞ 뒷굽이 잘 닳는 것은 체중이 지나치게 뒤에 실려 신발을 끌고 있는 증거, 허리는 처지고 등은 굽어진 다. 마치 고릴라와 같은 자세이다. 그런 자세에선 고릴라 정도의 지혜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척추성 우뇌인 셈이다.

정상적으로 닳게 되는 것은 구두 바깥쪽(왼발이라면 오른쪽, 오른발이라면 왼쪽)과 엄지발가락의 바닥 부분, 바깥쪽에서 들어와 엄지발가락으로 차는 식으로 걷는다. 구두의 바닥을 확인해 보도록.

Q. 똑바로 서서 누군가에게 등을 밀어 달라고 해본다. 이때 등이 퍼지는가?

A. 밀어도 등이 퍼지지 않는 사람은 →

골조송증

☞ 등골게 굽은 등이 아무리 해도 퍼지지 않는다 — 골조직에서 석회가 감소되며 뼈의 치밀질이 떨어져 이른바 뼈에 '바람'이 들어간 증거. 이때는 반드시 충분한 칼슘을 보급해 주어야 한다.

〈마쓰바라 에이다저 「우리집 홀닥터」〉